

별첨

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

2022. 8. 16.

목 차

- I . 공정거래 법집행을 혁신하겠습니다. 1
- II .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. 2
- III . 시장 반칙행위는 근절하겠습니다. 3
- IV .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. ... 4
- V .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. 6

I. 공정거래 법집행을 혁신하겠습니다.

◆ 공정위 조사·사건처리의 **예측가능성과 투명성**을 제고하고, **법집행 효율화**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 추진

① [투명한 절차]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'절차적 권리' 강화

최초 조사	조사 진행	심의·의결
· 구체적인 조사 대상·범위 고지	· 이의제기 절차 신설 · 공식 의견제출 기회 확대	· 심의속개 활성화 · 미고발사유 명시

-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
- 조사과정(자료제출 등)에 대한 '이의제기 절차' 신설
- 위원회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'의견제출 기회' 확대
 - * EU도 '사건진행상황회의(State of Play Meetings)'를 통해 수시로 의견 청취
- 심의속개를 **활성화***하고, 미고발사유 의결서 명시(과징금 사건)
 - * (현행) 재량결정 → (개선) 대규모 사건은 신청시 심의속개 원칙적 의무화

② [객관적 기준] 설득력 있는 공정한 사건처리 기준 마련

- ^부당지원·사익편취 법적용 예외대상 명확화, ^온라인 플랫폼의 동태적 효율성을 고려한 법집행기준(심사지침) 마련
- 정책수요자·전문가 등과의 소통으로 시장 현실을 충실히 반영

③ [신속한 처리] 선택·집중을 통한 법집행 효율성 제고

- 법위반 예방, 분쟁조정 등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 활성화
- 공정위 사건처리도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에 초점
- 단순 질서위반행위(가맹·대리점)는 지자체 이양으로 신속 처리 **협업**
- 장기사건 특별점검 등 사건 처리기한 관리 철저
 - * 실시간 사건현황판 설치(Warning System), 多쟁점·사실관계가 복잡한 대형사건은 '전담팀'을 구성하여 신속 처리 등

II.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.

◆ **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,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은 적극 지원**

① [경쟁제한적 규제] 진입규제, 사업활동 제약 등 규제 혁파^{협업}

- 기업애로 해소 차원의 규제개선을 넘어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'경쟁촉진형 규제개혁' 중점 추진

*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,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

② [대기업집단]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 제도 운용

-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'특수관계인' 범위 축소·조정

* 혈족·인척 범위 축소,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 제외, 사실혼 배우자 포함 등

-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

- 중요성·시급성 분석을 통한 공시제도 정비로 기업부담 완화

③ [M&A심사] 신속심사 + 자율성 보장으로 사업재편 지원

-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&A는 신고면제 또는 신속심사 확대

* PEF 설립 및 단순투자, 벤처기업에 재무적 투자 등

- 기업의 자체 시정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M&A심사제도 개편

* (현행) 공정위가 시정조치 설계·부과 → (개선) 기업이 시정방안 제출 후 협의

Ⅲ. 시장 반칙행위는 근절하겠습니다.

◆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 경쟁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제재

① [독과점 남용] ICT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시정

- 특히, 반도체·모바일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차단

* 기업의 私的장벽은 경쟁제한적 규제(公的장벽)와 같이 독과점 시장 고착화 초래

< ICT분야의 주요 독과점 남용행위 >



② [카르텔] 시장의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 근절

- 국민생활 밀접분야 및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 집중 감시

* Bing과류(2월), 육계(5월), 오리·철근(8월) 등

- 제재에 그치지 않고,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제도·관행 개선

* 공공발주자 입찰관여행위(들러리 섭외 요청 등) 방지 및 민간 입찰제도 개선

③ [내부거래]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감시 강화

-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집중 점검
- 다만, 새롭게 규율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법 위반 예방교육 우선 실시
 - * 사익편취 규제대상: 265개('21.5월) → 835개('22.5월, 570개사 증가)

④ [전속고발] 엄정하고 객관적인 고발제도 운용 ^{협업}

-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 고발
 - * 사법당국의 기소·판결사례를 분석하여 객관적 고발기준 마련(지침 개정)
- 의무고발 요청기한 명시, 절차 투명화 등 기업 예측가능성 제고

IV.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.

◆ 중소기업의 비용과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, '힘의 불균형'에 따른 불공정행위 근절

① [납품단가 조정] 제때 제값 받는 거래환경 조성 ^{협업}

- 시장실태*·법위반행위 조사 등 가용한 정책수단 최대 활용
 - * 원자재價 급등 분야(5월) 및 10만 원·수급사업자 대상(7월) 실태조사 실시
- ^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배포(중기부 합동) 및 체결선포식 개최, ^인센티브 제공*, ^Best Practice 공유 등 시장 자율적 연동 확산
 - * 우수기업 공정거래 협약평가시 반영, 연동계약서 사용시 별점 감경 등
- 자율확산 추이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 도입 여부 검토

② [중소기업 기술탈취] '종합적인 근절대책'으로 철저히 차단^{협업}

- 적발 및 조사·제재 강화 등 쏠 단계에서 기술탈취 유인 봉쇄

- [적발] ^지자체·유관단체와 협업, ^익명제보센터 운영, ^신고포상금 상향
- [조사] 기술유용감시 관련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여 수시 직권조사 실시
 - * 조치실적('17년~): 총 26건, 과징금 64.7억원 및 8개 법인·24명 개인 고발
- [제재] 법위반 억지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향 등 제재 강화

- 징벌적 손해배상액 확대 등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

- * (소송)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, 손해액 산정기준 도입
- (조정) 감정평가제도 도입, 시정조치 완료사건 조정신청 허용

③ [플랫폼] 혁신성장을 위해 자율규제로 공정성 보완^{협업}

-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자율규제 방안* 구체화

- *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, 자율규약, 상생협약, 모범계약·약관 마련 등

- 주요 업종별(배달앱, 오픈마켓 등) 갑을·소비자 이슈 논의 지원

- * (갑을) 과도한 수수료, 불투명한 검색 노출 기준 / (소비자) 짝퉁 유통, 리뷰 조작

-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(CP평가서 가점) 제공

④ [소상공인·납품업체] '힘의 불균형'에 따른 불공정행위 시정

- 가맹본부, 대형 유통업체, 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남용 중점 감시

-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분야의 납품업체 경영간섭 행위 금지

- * 예: 납품업체에게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요구 등

V.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.

◆ **신유형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를 차단하고, 국민의 생명·신체와 직결되는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**

① [디지털 소비자]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기만행위 집중 점검

- SNS 뒷광고, 거짓후기 등 ‘눈속임 상술(Dark Pattern)*’ 감시 강화
 - * 자신도 모르게 자동결제 동의,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하는 화면구성 등
- MZ세대 관심 분야(게임 아이템·명품 커머스 등) 불공정행위 시정

② [소비자 안전]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^{협업}

- 부처별 안전인증 정보를 상품 바코드로 원스톱 제공( 소비자24)
- 위해제품 유통 차단, 국제분쟁 조정 등 해외직구 보호장치 강화
- 안전 사각지대 해소,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안전정책 수립
(「소비자안전기본법」 제정)

③ [민생 보호] 국민 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 방지

- 생활·여가 품목에서의 불공정 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·개정
 - * 셀프빨래방, 골프장, 배달앱, 오픈마켓, SW, 항공마일리지 등
- 新 기술·서비스(예: 전기차, 5G 등) 관련 과장·기만 광고 제재